

◎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-204호

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77호(2012.10.18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427호(2018.12.2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12-4호(2021.01.07.)로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 결정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21-62호(2021.04.0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제기동 892-68번지 일대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5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명 칭 :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-68번지 일대
- 면 적 : 9,632.7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(주)하나자산신탁 (대표자 : 민관식)

4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
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
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90개월
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21. 04. 01.

7. 변경 내용

○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변경(정정)

구 분	토지등소유자 수	비 고
변경 전	233인	
변경 후	231인	감) 2인

○ 사업시행자(지정개발자) 지정 동의자 수 변경

구 분	토지등소유자 수	비 고
변경 전	210인	
변경 후	225인	증) 15인

○ 정비사업비 변경(10%이상 증가)

구 분	정비사업비	비 고
변경 전	104,724,693,000원	
변경 후	149,838,751,000원	증) 45,114,058,000원

8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비치). 끝.